

[별표 14의3] <신설 2001.4.28>

충돌시 차체구조기준(제102조제2항관련)

측 정 조 건	차 체 구 조 기 준
1. 매시 48.3~53.1킬로미터의 속도로 고정벽 정면 수직 충돌시	가. 좌석중심에서 좌·우 150밀리미터의 범위에서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계기판넬 가장 뒤끝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의 거리는 4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나.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수직횡단면과 앞쪽 내부격벽과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이에서 6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다. 앞좌석의 발놓는 공간 측벽간의 거리는 브레이크페달 중심높이에서 250밀리미터 이상일 것 라. 앞좌석 착석기준점을 지나는 천정과 바닥까지의 수직거리는 10퍼센트 이상 수축되지 아니할 것 마.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
2. 매시 35~38킬로미터의 속도로 이동벽후면 충돌시	가. 최후방 좌석의 착석기준점의 차량중심선 방향으로의 변위량이 7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. 충돌시 옆문이 열리지 아니하여야 하며 충돌후 모든 승객이 연장 등의 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문을 열 수 있을 것